|  |  |  |
| --- | --- | --- |
| **기업 재산양도 등 소득의**  **기업소득세 처리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0년 제19호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 실시조례》 제2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기업이 부동한 형식으로 취득한 재산양도 등 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 징수문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기업이 취득한 재산(각종 자산, 지분권, 채권 등 포함)양도 소득, 채무재편 소득, 수취한 기부금, 상환 불가한 미지급금 등은 화폐형식이나 비 화폐형식의 구현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1회적으로 소득인식 연도에 계상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이 공고는 발표한 날로부터 30일 이후에 시행한다. 2008년 1월 1일부터 이 공고를 시행하기 전에 각 지역에서 상기 소득에 따라 계산한 소득을 5년에 나누어 균등하게 각 연도의 과세대상소득금액에 계상하여 세금을 납부하기로 한 경우, 이 공고를 발표한 후 아직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과세대상소득금액은 1회적으로 본 연도의 과세대상소득금액으로 처리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상기와 같이 공고한다.  2010년 10월 27일 |  | **国家税务总局关于企业取得财产转让等所得企业所得税**  **处理问题的公告**  国家税务总局公告2010年第19号  根据《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实施条例》第二十五条规定，现就企业以不同形式取得财产转让等收入征收企业所得税问题公告如下：  　　一、企业取得财产（包括各类资产、股权、债权等）转让收入、债务重组收入、接受捐赠收入、无法偿付的应付款收入等，不论是以货币形式、还是非货币形式体现，除另有规定外，均应一次性计入确认收入的年度计算缴纳企业所得税。  　　二、本公告自发布之日起30日后施行。2008年1月1日至本公告施行前，各地就上述收入计算的所得，已分5年平均计入各年度应纳税所得额计算纳税的，在本公告发布后，对尚未计算纳税的应纳税所得额，应一次性作为本年度应纳税所得额计算纳税。  　　特此公告。  　二○一○年十月二十七日 |